

# 회 의 록

회 의 명	2020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2020.09.22.(화) 10:00~10:55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us)
참 석 자	○ 위원장 : 신승중(기획처장) ○ 위원 : 조용석(교수협의회장), 박범준(총학생회 회장), 이하영(부총학생회장), 김원희(대학원원우회장), 황병삼(노동조합지부장), 김효건(공인회계사)
불 참 자	○ 없음
안 건	1)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안) 논의 및 심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사·의결 3) 영산신학대학원 원우회 협조문 검토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p>□ 신승중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김명희 기획평가팀장의 성원보고, 박범준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p> <p><b>[안건1]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안) 논의 및 심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신승중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경과 및 협의 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실무협의체 간사를 담당했던 이주명 예산 담당자에게 요청함.</li> <li>○ 이주명 예산 담당자는 실무협의체 진행 경과 보고, 협의 내용(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시기, 재원관련 등), 소요 예산, 총 소요액의 책정액 또는 실납부액 대비 비율 등 세부 내용을 설명함.</li> <li>○ 신승중 위원장은 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li> <li>○ 황병삼 위원은 실무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협의한 내용으로 총학생회의 동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으며, 타대학과 비교해보아도 5~7% 선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힘.</li> <li>○ 조용석 위원은 이견이 없음을 밝힘.</li> <li>○ 김효건 위원은 소규모 대학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적절한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에 계속</p>

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

앞장에서 이어짐.

- 박범준 위원은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은 없으며, 추후 학교 재정 상황이 나아졌을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 장학금에 대한 지급 검토를 요청함. 또한 이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김원희 위원은 학생 모두에게 이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 이하영 위원은 기준과 관련해서는 협의체 회의 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을 없으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시기에 대한 예상 일자 확인을 요청함.
- 신승중 위원은 학생지원처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 이상의 의견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함.

#### [안전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심사의결

-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신승중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이주명 예산 담당자에게 요청함.
- 이주명 예산 담당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구성, 회의 소집 통보, 회의록 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화가 필요함과 개정(안) 세부 내용을 설명함. 그리고 회의록 공개의 경우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을 설명함.
- 황병삼 위원은 해당 내용은 2주기 대학평가보고서 상에 계획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보완 및 강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음을 밝힘.
- 김효건 위원은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는 부분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박범준 위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총학생회에서 요청했던 내용도 포함된 부분이 있어 이견은 없음을 밝히고, 전문 위원 위촉시 학생회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절차를 문의함.
- 신승중 위원장은 전문 위원 추천 대상자의 다수 또는 단일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경우 및 상황에 맞추어 학생회의 동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답변함.
- 황병삼 위원은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가 위촉시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이력서 등을 학생회에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상의 의견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함.

다음장에 계속

<p>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p>	<p>앞장에서 이어짐.</p> <p>□ 안건3과 관련하여 대학원 원우회장이 제척사유로 접속을 종료함.</p> <p><b>[안건3] 영산신학대학원 원우회 협조문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승중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인 원우회장의 대학원 학생 대표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li> <li>○ 황병삼 위원은 과거 영산신대원 원우회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당시 전체 원우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실제 위임장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그 당시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면 위임장을 받을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위임장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결정사항에 대해 추후 다른 원우회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함.</li> <li>○ 김효건 위원은 타대학의 사례를 볼 때 아직 대학원까지 등록금 반환을 검토한 경우는 없으며, 또한 타대학의 경우 대학원이 등심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학원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킨 것만 해도 발전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 과반수 정도의 위임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조용석 위원은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는 것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신승중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기획처에서 추가적인 검토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발언할 내용이 있는지 문의함.</li> <li>○ 신승중 위원장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발언함.</li> </ul> <p>□ 위원장의 폐회 선언 및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p> <p>붙임 1. 위원 서명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p>
-------------------------------	---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권응석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황 병 삼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김효건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박범준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이하명 이하명

1/1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위 원

김원희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참석자

김명희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0.09.22.(화)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참석자 이득영 ~~(서명)~~

---

# 2020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

- 일 시 : 2020.09.22.(화) 10:00~
- 장 소 :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 안 건
  - 1)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안) 논의 및 심의
  - 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검토
  - 3) 영산신학대학원 원우회 협조문 검토



# 【안건1】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안) 논의 및 심의

## 1. 협의 진행 경과 보고

일시	내용	비고
2020.06.22.(월)	'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실무협의체" 구성 요청	
2020.07.01.(수)	실무협의체 구성(인사명령)	기획처, 교무혁신처, 학생지원처, 대학원
2020.07.27.(월)~ 2020.09.09.(수)	실무협의체 내부회의 5회, 학생대표 참여회의 4회 실시	
2020.09.10.	협의내용 확인 및 서명	실무협의체 위원,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안)을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며, 최종 합의 및 확정된 것은 아님

## 2. 협의 내용: '20학년도 코로나19 특별장학금(가칭) 지급(안), 학부생 대상

구 분	세부 내용
지급기준	'20-1학기 수업료 책정액의 <b>5%</b> ※ 생활비성 일괄지급액 포함 감면총액(수혜 가능액)은 2학기 실납부액 대비 약 8.62% (2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고려시 약 14.83%) ① 1학기 생활비성: 일정액 10만원 지급 ② 2학기 등록금성*: 수업료 책정액의 5% - 1학기 생활비성 장학금(10만원) * 2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잔액 범위내 적용
지급대상	'20-1학기 학점수여자(중도휴학자 및 제적/자퇴생, 계약학과 및 외국인학생 제외) ① 1학기 생활비성: 지급대상 전체 지급** ** '20-1학기 졸업자 및 학기초과자는 생활비성 일정액 10만원만 지급 ② 2학기 등록금성: 2학기 등록자 대상, 전액장학생 및 학기초과자 제외,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 소멸(등록 후 휴학한 경우는 지급 가능)  ※ '20-2학기만 등록한 경우*** (2학기 학점수여자(중도휴학자 및 제적/자퇴생, 계약학과 및 외국인학생 제외)는 생활비성 일정액 10만원만 지급 *** 1학기 학점수여자(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수혜받은 자)는 제외
지급시기	① 1학기 생활비성: 9월중(예정) ② 2학기 등록금성: 10월말 또는 11월중(예정)

구 분	세부 내용
재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학기 성적장학금 유지('20-1학기 성적에 대한 '20-2학기 장학금 지급)</li> <li>○ '20-2학기 성적향상장학금 미지급</li> </ul>
비고	○ '20학년도 1회만 지급

참고) 생활비성 장학금: 등록금 범위의 장학금(학업보조비, 해당학기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있음)

등록금성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해당학기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음)

### 3. 소요 예산(예산) : 약 5억원 예상

책정액 기준 감면가능 총액	생활비성 전액장학생 등 추가액	2학기만 등록한 경우 추가액	총 소요액(예산)
463,992천원	46,600천원	18,600	529,192천원

### 4. (참고) 총 소요액의 책정액 또는 실납부액 대비 비율 비교

1학기 책정액 총액 대비	1학기 실납부액 총액 대비	2학기 책정액 총액 대비	2학기 실납부액 총액 대비
5.71%	8.99%	6.29%	8.93%

※ 중도휴학자 및 제적/자퇴생, 계약학과 및 외국인학생 제외

## 【안건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 심사 · 의결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제3조(구성) ①이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직원(재단인사 포함)</li> <li>2. 학생</li> <li>3. 관련 전문가</li> <li>4. 학부모 또는 동문</li> </ol> <p>②위원회는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위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p>	<p>제3조(구성) ①이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직원(재단인사 포함)</li> <li>2. 학생</li> <li>3. 관련 전문가</li> <li>4. 학부모 또는 동문</li> </ol> <p>②위원회는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위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u>다만, 교직원은 등록금 및 예산 정책 관련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는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학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u></p>	<p>· 기획처장 당연직, 전문가 학생회 동의 규정화</p>
<p>제6조(회의) ①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 또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p> <p>②회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2분의 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회의) ①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 또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p> <p>②회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2분의 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③회의 소집을 위해 7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u></p>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u>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 일자 7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이 정해진 시급성이 있는 안건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u></p>	<p>· 사전 통지 및 공고 규정화</p>
<p>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제8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u>표결 수</u>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회의 결과는 교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교내 구성원이 이전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p>	<p>· 회의록 공개 규정화 (현재 공개 중)</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 【안건3】 영산신학대학원 원우회 협조문 검토

1. 요청 내용: 2020학년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2. 검토 사항: 총학생회와 같이 학부 학생을 대표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대학원 학생 대표성 검토 필요

## [참고] 타대학(사립대) 반환 현황

※ 1학기 자퇴, 휴학, 제적생, 2학기 복학생은 기본적으로 제외, 졸업자는 일정금액 또는 반환비율 적용 지급

### 서울 권역 대학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㉔ 등록금성, ㉕ 생활비성)	제외대상 (㉔ 등록금성, ㉕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10만원	1학기 수업료(등록금성 장학금 잔액 범위내)의 5.8%	1학기 재학생 ㉔ 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가능자	㉔ 1학기 전액장학생	성적장학금 미지급
OO대	-	1학기 실납부액 5% (홈페이지 미공개 상태)			성적장학금 지급
OO대	-	1학기 실납입금의 6%	1학기 재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OO대	수업료의 4%	-	1학기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	수업료 4% 금액이 5만원 미만인 자	
OO대	-	1학기 실납입액의 4.8% (등록금 범위내 최저 1만원)	1학기 재학생	학부수료생, 실납입액 0원인 자 등	
OO대	-	10만원(특정대상), 1학기 실납부액(등록금과 기지급장학금의 차액)의 10%	○ 1학기 내국인 재학생 중 2학기 등록자 ○ (10만원) 납부액 100만원 미만자 ○ (10%) 납부액 100만원 이상자	외국인학생	○ 미등록 휴학시 소멸 ○ 성적장학금 지급
OO대	10만원	최대 20만원	1학기 재학생 중 정규등록자 및 1학기 재학생 중 2학기 정규등록자	외국인학생, 학점등록자	
OO대	-	1학기 실납부금의 약 7.9%	1학기 등록 및 성적 취득자	1학기 전액장학생, 외국인, 학점등록생, 등록금 반환 소송자	성적장학금 지급
OO대	-	실납부액의 7% (등록금 범위내 최저 1만원)	1학기 재학생	지급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전액장학생 포함)	희망장학금으로 지급
OO대	-	최대 30만원 (홈페이지 미공개 상태)	1학기 재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 성적장학금 미지급 ○ 1학기 졸업자는 10만원 지급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제외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	1학기 개인별 수업료 납입 실비 기준 정률 최대 4.65% (등록금 범위내 최저 1만원)	1학기 종강일 기준 학부 재학생 중 2학기 등록자	수업연한초과자, 2학기 국고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받는 자	
OO대	-	1학기 수업료로 실제 납부한 금액의 5%	1학기 재학생(정규등록 및 학점등록생)	1학기 전액장학생	
OO대	-	1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의 6%	1학기 학부 재학생 중 수업료 실 납부액이 있는 자	전액장학생, 특별장학금 1만원 미만자	성적장학금 축소
OO대	최대 15만원	-	1학기 학부 등록자중 실납부금액이 존재하는 정규과정 재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1학기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수강신청無)	

### 경기 권역 대학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제외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	각 학기 수업료 범위내 인문/사회 24만원(12만원*2학기) 자연과학/체육 28만원(14만원*2학기) 공학/예능 등 32만원(16만원*2학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재학생	전액장학금수혜자, 초과학기자(6학점 미만), 의과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신청시 소멸 (계좌 오류 입력 대상자는 지급 제외)
OO대	-	최대 10만원	1학기 학부 재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등록이월자(1학기 등록금 0원)	
OO대	-	실납부수업료의 6%	1학기 등록 재학생	1학기 외국인 교환/복수학위, 1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및 졸업유예자, 1학기 전액장학생	
OO대	-	10만원(특정대상),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10만원) 1학기 전액장학생, 1학기 실납입액이 수업료의 10% 미만자 중 2학기 정규학기 등록자 ○(10%) 그 외 2학기 정규학기 등록자	1학기 등록휴학생, 외국인학생	○ 성적장학금 미지급 (수석/성적우수/단우/성적향상) ○ 미등록 휴학시 소멸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㉔ 등록금성, ㉕ 생활비성)	제외대상 (㉔ 등록금성, ㉕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10만원	실납부금액의 10%	㉔ 1학기 이수자 전체 ㉕ 1학기 이수자 중 2학기 등록자에 한함	㉔ 전액장학생, 2학기 복학자, 학점교류자	기한내 계좌미입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OO대	15만원	-	1학기 학부 재학생(성적 산출자, 8/31 이전까지 자퇴하지 않은 자)		입력 기한 초과시 소멸 가능
OO대	10만원	-	1학기 등록자 중 성적이 부여된 모든 학생		
OO대	-	실납부수업료의 5.12%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무료 복학하여 성적을 받은 자 ○1학기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학적유지자	미신청시 소멸
OO대	-	1학기 수업료(1학기 장학금 수혜가능액 범위내)의 7.14%	1학기 학부 재학생(무료복학자, 부분등록생 포함)	1학기 전액장학생	
OO대	학기별 10만원	-	2학기 등록자	전액장학생, 복학생	○성적장학금 미지급 ○2학기는 대학원생 지급
OO대	10만원(특정대상), 실납부액의 8%	-	○(10만원) 1학기 졸업예정자, 성적반영 이후 휴학자, 실납부액 적용후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자 ○(8%) 그 외 2학기 등록자		성적장학금 축소(1/3)

### 강원 권역 대학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㉔ 등록금성, ㉕ 생활비성)	제외대상 (㉔ 등록금성, ㉕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10만원	-	1학기 재학생		
OO대	10만원	1학기 수업료 실납입액 5%	1학기 재학생	1학기 일반휴학 및 제적생, 졸업유모 및 유예자 중 미등록생 ㉔ 1학기 전액장학생	미신청시 소멸

충청 권역 대학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제외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00대	10만원	-	학부 재학생 전원(2학기 복학자 포함)	1학기 졸업생, 학기초과자	
00대	10만원	1학기 실부담금 범위내 10만원	1학기 이수학 학부 재적생	미등록 및 등록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00대	10만원(특정대상)	최대 20만원	㉡ 졸업, 수료, 유예, 초과학기자(2학기), 전액장학생 ㉠ 1학기 이수 후 2학기 정규학기 등록자		㉡ 미신청시 소멸 미등록 휴학시 소멸
00대	20만원	-	2학기 등록자	지급시점 기준 제적자, 졸업유예자, 2학기 미등록자	
00대	1학기 실납부액의 8.5%(최저 10만원)	-	1학기 등록한 학생이 2학기에 등록한 경우		
00대	10만원	1학기 실납부액의 10%	㉠ 1학기에 등록한 전체 재학생 (성적평가원료자) ㉡ 2학기 등록 전체 재학생	실납부액의 10%가 1만원 미만자	
00대	-	1학기 실납입금액의 10%	1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 중 2학기 등록자	1학기 전액장학생, 1학기 등록휴학생	성적장학금 미조정
00대	10만원	1학기 실수업료 납부액의 10% - 생활비성 10만원	1학기 성적확정자 등 2학기 등록자	1학기 전액장학생, 2학기 복학생	○ 성적장학금 50% 축소 ○ 2학기 미등록 휴학시 소멸
00대	-	학비보조 성격 장학금 수혜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10%, 150만원 이하 7%, 200만원 이하 5%, 250만원 이하 3%	1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이수자) 중 2학기 등록자	○ 1학기 학비보조 성격의 장학금 250만원 초과 수혜자 ○ 1학기 등록휴학자	
00대	-	수업료 납부액 5% + 성적장학금 축소액(총 7% 내외)	1학기 등록재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1학기 등록휴학생, 외국인, 학점등록자, 수업료 5% 금액 1만원 미만자	성적장학금 축소
00대	-	1학기 실납입액의 4%	1학기 성적 인정자	1학기 휴학자, 전액장학금 수혜자	
00대	-	1학기 수업료 범위내 잔여금액의 10%	1학기 등록학 학부 재학생 중 2학기 등록자	1학기 등록휴학자	

전라 권역 대학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제외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	1학기 수업료 실납부액의 10%	1학기 성적이 산출된 학부 재학생	전액장학생	
OO대	10만원 (졸업자 20만원)	최대 10만원	1학기 등록 후 성적이 산출된 학부 재학생 ☞ 2학기 등록자	☞ 납입내역이 없는 초과학기자 ☞ 전액장학생	미등록 휴학시 소멸
OO대	-	1학기 등록금 납부금의 11.5% (상한 25만원)	1학기, 2학기 연속 등록한 정규학기 재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및 1학기 휴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	1학기 전액장학생이 2학기 등록금 발생시 지급
OO대	10만원	1학기 수업료 실 납부액의 10% - 생활비성 10만원	☞ 1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 ☞ 1학기 성적이 산출된 학부 재학생 중 2학기 등록자	☞ 논문, 채플 등 단순 졸업유예자, 8월 졸업자 ☞ 12학점 미만 및 평점 2.5 미만자, 전액장학생, 8월 졸업자	

경상 권역 대학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제외대상 (☞ 등록금성, ☞ 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10만원	1학기 수업료의 10%(실납부액 범위내) - 생활비성 10만원	1학기 성적 산출자 ☞ 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가능자 중 2학기 등록자	☞ 전액장학생	
OO대	10만원	1학기 실납부 수업료의 10% - 생활비성 10만원	1학기 성적 산출자 ☞ 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가능자 중 2학기 등록자	☞ 전액장학생, 1학기 실납부 10만원 미만자	◦ 성적장학금 지급 ◦ 미등록 휴학시 소멸
OO대	10만원(특정대상)	10만원	1학기 재학생(등록자) ☞ 장학금 수혜가능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OO대	-	2학기 수업료 책정금액의 5%(실납부금 범위이내)	1학기 성적 산출자 중 2학기 등록자	전액장학생	장학금 예산 미조정

구 분	반환기준		지급대상 (☞ 등록금성, 생생활비성)	제외대상 (☞ 등록금성, 생생활비성)	비고
	생활비성	등록금성			
OO대	10만원	-	1학기 등록금 완납 재학생		
OO대	-	1학기 실납부액의 12% (등록금 범위내 최저 10만원)	1학기 성적 산출자 중 2학기 등록자	전액장학생	
OO대	10만원	1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의 10% - 생활비성 10만원	☞ 1학기 등록금 완납 재학생 ☞ 1학기 성적 산출자, 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가능자	☞ 수료자, 학사학위유예자 ☞ 1학기 전액장학생	
OO대	-	1학기 수업료 실납입액의 10%	1학기 성적 취득자 중 재적생 중 2학기 등록자	1학기 전액장학생	
OO대	-	최대 10만원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완료한 학생 중 2학기 등록금 납부 대상자	8월 졸업대상자	◦성적장학금 지급 ◦지급우수재학생장학금 축소
OO대	-	(1학기)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 이내(최대 10만원) (2학기)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 이내 - 1학기 지급액	1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	전액장학생	
OO대	10만원	최대 10만원	☞ 종강일 기준 학부 재학생 ☞ 2학기 정규학기 등록자	2학기 전액장학생	◦생활비성 미신청시 미지급 ◦미등록 휴학시 소멸